

차대번호(원동기형식)재표기등 인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5일
신청인	성명(명칭)	생년월일(사업자번호)	
	주소	전화번호	
자동차	등록번호	차대번호	
	차종·용도	원동기형식	
신청사항	[] 차대번호신규표기 [] 차대번호표기지움·재표기 [] 원동기형식신규표기 [] 원동기형식표기지움·재표기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

첨부서류	표기를 지우거나 새로운 표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○ 표기체계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: 수입면장, 기술검토서 사본, 안전검사증 사본 ○ 교통사고로 표기부분이 손상된 경우 : 사고사실증명서 ○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 :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등	수수료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정한 금액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제작·조립자 및 교통안전공단 외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).
-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5호).

처리절차

